

# 정부 도내 SOC사업 무관심... 건설업계 비상

일감 70% 이상 공공건설 의존  
평창올림픽 공사 끝나 경기위축  
업계 “현안사업 국비지원 시급”

건설업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강원도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7 건설·  
부동산경기전망’에서 내년 정부가

SOC 예산 감소를 예고하고 있어 지  
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감소할 것  
으로 내다봤다. 실제 도가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SOC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까지 계획된 도의 도로정비  
에 포함돼 있는 춘천~철원 등 5개 고  
속도로는 정부 투자계획에 아예 없다.

현재 도 건설시장은 공공건설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적절한 정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평창올  
림픽 관련 대형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건설업계  
는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의 5개  
고속도로 사업과 함께 설악산 오색 케  
이블가 설치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위윤기자

# 건설단체, 지역업체 우대 인센티브 확대 요구

하반기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철사업체 영향 경영난 대책 촉구

강원도내 건설단체들이 지역 업체 우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도는 15일 오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2016년도 하반기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주국토청, 도교육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 등 발주기관과 도건설협회, 도전문건설협회, 도기계설비협회, 도전기공사협회 등 건설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인철 도건설협회장은 "발주처들이 신기술 공법, 특허 등을 무리하게 적용, 영세 중소기업체의 공사 수주가 저조한 만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흥균 도 측량협회장은 "간판만 달고 있는 철사업체들로 지역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2016년도 하반기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가 15일 오전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박병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건

설업체 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강릉시, 춘천시와 평창군은 우수 기관, 동해시, 철원군, 인제군은 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은복

## 강원도 지리적표시 등록 전국 4위



**건설단체연합회 연탄 기증**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15일 춘천연탄은행(대표 정해창 목사)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5000장을 기증했다.



## 강원건단련, 춘천연탄은행에 연탄 5000장 기증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15일 춘천연탄은행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5000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오인철 회장은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나

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 조달청, 다음주 총 2482억 신기술·서비스 입찰 집행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음주(12.19~23) 대법원 수요의 2017년 등기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총 359건, 2482억원 규모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주 대비 입찰 건수가 70건 가까이 줄었고 대규모 용역사업 발주도 감소함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 총 집행 규모는 한 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내주 집행을 앞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사업이 총 222건, 1877억원 규모로 전체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가

운데, 일반용역이 133건, 590억원 규모로 뒤를 이을 예정이다.

건설 용역의 경우에는 의령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4건, 15억원 규모의 입찰이 집행된다. 계약방법별로는 설계공모 대상이 1건도 없는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방식이 2건,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이 각 1건씩 집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지방청(1226억원)과 대전 소재 본청(682억원)이 전체 집행금액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산 등 10개 지방청이 총 574억원 규모의 입찰을 각각 소화할 계획이다. 병승권기자



## 공사가 중단된 경우 감리대가 산정기준

최근 판례는 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분의 일시불 보수 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432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입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입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감리계약에서 후분의 일시불 보수 약정을 하였거나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은 ‘공사의 공정률’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인가.

대법원은 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리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로 감리비를 정산하여야지, 공사의 공정률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당초 약정된 감리비 중 미지급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최근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대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분쟁을 조기에 차단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단계에서의 사전적 대응을 통한 치밀한 계약 관리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올흔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